

◇ 유 의 사 항 ◇

1. 재산목록은 동봉한 재산목록 양식에 맞추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accountinfo.or.kr 또는 www.payinfo.or.kr)를 통한 본인 명의의 ‘**계좌통합조회(상세내역)**’ 과 ‘**해지결과조회**’ 를 인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한 조회가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내역조회 서비스(cont.knia.or.kr)를 통한 본인 명의의 ‘**생존자보험가입내역조회**’ 와 ‘**휴면계좌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휴대폰인증도 가능함).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찾기 서비스(<https://www.ksd.or.kr/ko/e-service/finding-stocks-guide>)를 통한 본인 명의의 ‘**미수령주권내역**’ 과 ‘**주주께서 찾아가신 주권내역**’ 과 ‘**실질주주정보**’ 를 인쇄 (화면 오른쪽 상단에 PRINT 버튼 있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국토교통부의 K-Geo플랫폼(<http://www.kgeop.go.kr>)에서 ‘**내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한 본인 명의 재산을 인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등본입니다.

2025. 11. 5.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법원주사 황혜선



재 산 목 록

사건		당사자		작성일	20
----	--	-----	--	-----	------------

아래 재산의 종류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별첨 작성요령에 따라 뒷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구 분	재산의 종류
I	동 산	<input type="checkbox"/> 1.현금 <input type="checkbox"/> 2.어음·수표 <input type="checkbox"/> 3.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input type="checkbox"/> 4.금·은·백금류 <input type="checkbox"/> 5.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악기 <input type="checkbox"/> 6.사무기구 <input type="checkbox"/> 7.가축 및 기계류 <input type="checkbox"/> 8.농·축·어업·공업생산물 및 재고상품 <input type="checkbox"/> 9.기타의 동산
II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input type="checkbox"/> 10.부동산 소유권 <input type="checkbox"/> 11.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input type="checkbox"/> 12.부동산에 관한 청구권(부동산의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input type="checkbox"/> 13.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에 관한 권리(소유권,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input type="checkbox"/> 14.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III	채권 기타의 청구권	<input type="checkbox"/> 15.금전채권 <input type="checkbox"/> 16.대체물의 인도채권 <input type="checkbox"/> 17.예금 및 보험금 등 채권 <input type="checkbox"/> 18.기타의 청구권(앞의 3번부터 8번까지 항목에 해당하는 동산의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기타의 청구권)
IV	특허권·회원권 등의 권리	<input type="checkbox"/> 19.회원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및 그 이전청구권 <input type="checkbox"/> 20.특허권 및 그 이전청구권 <input type="checkbox"/> 21.상표권 및 그 이전청구권 <input type="checkbox"/> 22.저작권 및 그 이전청구권 <input type="checkbox"/> 23.의장권·실용신안권 및 그 이전청구권 <input type="checkbox"/> 24.기타(특허권·상표권·저작권·의장권·실용신안권에 준하는 권리 및 그 이전청구권)
V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25.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26.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양도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 <input type="checkbox"/> 27.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처분행위
VI	채무	<input type="checkbox"/> 28.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input type="checkbox"/> 29.그 밖의 채무
VII	고정적 수입 등	<input type="checkbox"/> 30.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부양료 <input type="checkbox"/> 31.그 밖의 소득(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30번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VIII	고정적 지출	<input type="checkbox"/> 32.향후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
IX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위 목록 전체 “해당사항 없음”		

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제1. 절차 안내

귀하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귀하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양식 사용).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귀하에게 제출하는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 재산목록 작성요령

1. 일반적 주의사항

- 가. 첨부된 재산목록은 만년필이나 볼펜을 사용하거나 컴퓨터 등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백하게 해당사항을 기입·작성하여야 합니다.
- 나. 양식의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도의 별지에 기입하고, 양식의 해당란과 귀하가 작성한 별지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예: 양식의 해당란에는 “별지 1에 기재”라고 표시하고, 별지 1에는 “양식의 1번 항목에 관한 것”이라고 부기함).
- 다. 각 항목에 기재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그 사실관계를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 라.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 또는 등록이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재산은 그 명의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마. 재산명시결정에서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의 종류와 하한이 되는 액수가 아래 2.의 각항에 기재와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재산명시결정에서 정해진 종류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 결정문에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의 하한이 되는 액수는 1,000만 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가 보유한 예금채권의 합계액이 900만 원인 경우에 예금 채권은 기재하지 않음).

2. 각 항목의 기재요령

아래의 설명을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해당란에 귀하의 재산을 기재하십시오(본안사건 상대방과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면 그 취지를 비교란에 기재하고,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는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후 증여·상속받은 재산 등)인지 여부를 비교란에 기재하십시오).

I. 동산

귀하 및 귀하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 및 본안사건 상대방을 포함)의 생활필수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동생활용품은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1. 현금: 외화를 포함하여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금전의 총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그 보관장소를 기재
2. 어음·수표: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어음·수표의 발행인, 지급인, 지급기일, 지급지, 액면금, 수량, 보관장소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가액은 액면금액에 의하고, 어음과 수표의 각 액면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것 외에 그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도 기재할 것(예: 어음의 액면금은 60만 원, 수표의 액면금은 80만 원인 경우에도 각각 기재))
3. 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의 종류, 발행인, 가액, 수량, 만기일,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가액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산정하고, 합계액의 산정방법은 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4. 금·은·백금류: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은·백금과 금은제품 및 백금제품을 품명, 중량, 제품의 종류, 가액,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가액의 산정은 이 재산목록 작성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의하고, 합계액의 산정은 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5.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악기: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과 악기를 품명, 크기, 수량, 가액,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가액의 산정은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하고, 여러 개의 품목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은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여러 개가 집합되어 하나의 구조물을 이룬 경우(예: 진주목걸이)에 그 가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은 기재할 것)
6. 사무기구: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사무기구를 종류, 수량, 가액, 소재장소를 구분하여 기재(가액의 산정은 2번 및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7. 가축 및 기계류: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류의 품명, 수량, 가액, 소재장소를 구분하여 기재(가액의 산정은 2번 및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8. 농·축·어업·공업생산물 및 재고상품: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농·축·어업생산물(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 공업생산물과 재고상품을 종류, 수량, 단가,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가액의 산정은 2번 및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9. 기타의 동산: 4번부터 8번까지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유체동산으로서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인 것을 기재(그 기재요령과 가액의 산정방법은 5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II.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10. 부동산 소유권: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소재지, 지목(건물의 경우에는 구조와 용도), 면적,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가액의 산정방법은 5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하고,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그 소유관계를 표시하고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
11. 용익물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과 차임 또는 지료, 계약 체결일과 만료일,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등을 구분하여 기재

12.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예: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재개발·재건축·환경정비사업에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등)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계약일자, 대금액, 계약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구분하여 기재
13.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에 관한 권리(소유권,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1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14. 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위 각 권리의 종류, 광물 또는 어업의 종류(예: 금, 근해선망어업),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수면의 위치, 그 권리의 범위를 구분하여 기재(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1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Ⅲ. 채권 기타의 청구권

15. 금전채권: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권을 채권의 종류, 근거 또는 내용(예: 2005. 1. 1.자 대여), 금액, 변제기일, 계약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구분하여 기재(동일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개개의 채권액이 1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그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각각의 채권을 모두 기재하고, 저당권, 유치권, 질권 또는 양도담보 등의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는 그 담보물권의 내용도 아울러 기재)
16. 대체물의 인도채권: 100만 원 이상의 대체물인도채권을 기재(15번 항목의 기재요령에 따라 기재)
17. 예금 및 보험금 등 채권: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각종 예금과 보험금 및 보험해약환급금을 예금 또는 보험계약의 종류, 예금액 또는 보험금액 및 보험해약환급금액, 예탁한 은행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명칭과 소재지, 계좌번호를 구분하여 기재(합계액의 산정은 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하고, 보험해약환급금의 산정은 이 재산목록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함)
18. 기타의 청구권(앞의 3번부터 8번까지 항목에 해당하는 동산의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기타의 청구권) : 9번 항목에 해당하는 동산의 인도청구권 또는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목적물의 종류, 수량, 대금액, 근거,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구분하여 기재(9번 항목의 설명 참조)

Ⅳ. 특허권·회원권 등의 권리

19. 회원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및 그 이전청구권: 권당 가액 1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를 종류, 발행인, 수량,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그 이전청구권의 경우에는 청구권의 근거와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아울러 기재하고, 가액의 산정은 4번 및 5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20. 특허권 및 그 이전청구권: 각 권리의 종류, 내용, 등록일자를 구분하여 기재(그 이전청구권에 대하여는 19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 21.~24.: 위 20번의 작성요령과 동일

Ⅴ.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귀하가 이 법원으로부터 ①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양도한 모든 부동산과 ②

같은 기간 내에 귀하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양도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 ③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처분행위 일체를 기재(거래 상대방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귀하와의 관계, 거래내역과 일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가액을 비교란에 기재하고, 시가란에는 거래 당시의 시가를 기재)

VI. 채무

28.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금융기관에 대한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무와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목적물에 대한 인도, 권리 이전 채무를 채무의 종류, 근거 또는 내용(예: 2005. 1. 1.자 대출), 금액, 변제기일, 금융기관의 명칭·지점, 계좌번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동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개개의 채무액이 1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그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각각의 채무를 기재하고, 저당권, 유치권, 질권 또는 양도담보 등의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는 그 담보물권의 내용도 아울러 기재)
29. 그 밖의 채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무와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목적물에 대한 인도, 권리 이전 채무를 채무의 종류, 근거 또는 내용(예: 2005. 1. 1.자 차용), 금액, 변제기일, 상대방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구분하여 기재(기재요령은 28번 항목의 설명 참조)

VII. 고정적 수입 등

30.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부양료 :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정기적으로 받을 부양료를 보수 또는 부양료의 종류와 금액,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와 부양관계의 성립일자, 고용주 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보수 또는 부양을 지급받는 일자를 구분하여 기재
31. 그 밖의 소득(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30번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기타의 소득으로서 각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소득을 소득의 종류, 금액, 근거 또는 내용을 기재(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아울러 기재하고, 합계액의 산정방법은 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VIII. 고정적 지출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까지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예: 월세, 대출금 이자, 양육비, 근로자 급여)을 그 종류와 금액,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지출 주기 및 일자(예: 매월 말일, 매주 월요일), 지출의 시기와 종기가 있는 경우 그 날짜를 구분하여 기재

IX. 기타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을 기재

제3. 작성례

앞면

번호	구분	재산의 종류
I	동산	<input type="checkbox"/> 1.현금 <input type="checkbox"/> 2.어음·수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3.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input type="checkbox"/> 4.금·은·백금류 <input type="checkbox"/> 5.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악기 <input type="checkbox"/> 6.사무기구 <input type="checkbox"/> 7.가축 및 기계류 <input type="checkbox"/> 8.농·축·어업·공업생산물 및 재고상품 <input type="checkbox"/> 9.기타의 동산

뒷면

재산의 종류	내역	재산의 종류	내역
3. 주권	발행인 : 삼성전자 주식회사 1주의 액면가액 : 10,000원 1주의 시장가격 : 700,000원 주식의 종류 : 보통주 수량 : 100주 예탁기관 : 삼성증권 주식회사		